

學校圖書館發展의 問題點

—施行令에 要望되는 基準과 司書教師問題를 中心으로—

崔 根 滿

머 릿 말

우리들은 오랫동안 圖書館事業이 社會發展과 民族文化繼承의 要繙가 된다는 標題아래 數年間 沈滯하고 落後된 이 事業의 重要性을 複치고 努力한 보람있어 1963年 10月28日을 期하여 圖書館法이 法律第1,424號로 制定公布되어 韓國圖書館史의 한 페이지를 裝飾하였으며 社會敎育과 學校敎育의 正常의 發展의 基礎가 되리라 믿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同法만으로 圖書館이 發展하는 것은 아니며 法第5條에 規定된 施設基準과 法第6條에 規定된 司書職員의 配置에 關한 施行細則이 制定되어야 하며 이를 推進하기 為하여 關係當局은 施行令 全般에 걸쳐 連日會議를 거듭하고 現實과 附合되며 圖書館이 發展할수 있는 道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勿論 現實을 無視한 法律은 있을 수 없겠지만 現代社會가 要求하는 것은 專門知識을 바탕으로 한 頭腦의 競爭이며 頭腦의 貧困은 곧 現代文明의 後進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耐乏과 忍耐로 經濟를 開發하여 貧困을 打破하려고 온갖 힘을 바쳐 經濟開發5個年計劃을 果敢하게 推進하고 있는 中이다. 이 計劃이 成功裡에 目的을 達成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提

供할수 있는 質은 資料에 依하여 充分한 檢討로 計劃이 立案推進 되어야 함은 再言을 要치 않는다.

이와 併行하여 知識의 貧困을 어떻게打破하고 開發하느냐 하는 重要한 問題가 併行되어야 한다. 例를 들면 大學에서 4年間 專攻한 分野를 繼續研究하고 開拓하여 새로운 知識을 社會에 寄與할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一般國民들은 손쉽게 책을 求해 읽을수 있도록 社會敎育制度가 確立되고 育成되어야 한다. 社會敎育 分野에서 가장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圖書館政策이 소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번에 制定公布되는 圖書館法施行令을 充分히 檢討하여 法의 保護 및에合理的으로 育成發展되어 所期의 目的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現實에 지나치게拘泥되어 母法인 圖書館法과 같이 捉法이 되지 않도록 關係當局에 要望하는 바이다. 들헌데 施行令草案에도 몇개의 未備하고 애매한 條項이 있다고 하는데 이點 國家와 圖書館界 發展을 為하여 是正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參考로 日本과 美國의 司書敎師配置基準과 施設基準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司書教師 및 司書職員配置 基準問題

이) 問題는 우리 나라基準과 外國의 基準을 比較検討하는 것이 順序겠으나 우리基準은 아직 施行令이 公布되지 않아 外國의 基準만을 紹介하고자 한다.

가. 日本學校圖書館基準(文部省 1953)

(1) 司書教師는 學生數 450名 未滿일 때에는 兼任 1名, 450名以上은 專任 1名

(2) 司書職員은 學生數 900名 未滿일 때 專任 1名 1800名未滿인 때는 專任 2名 그 以上은 專任 3名을 둔다.

나. 美國學校圖書館基準 (노스캐로라이나州)

國民學校圖書館

(1) 教師 15~20名의 學校——圖書館學 6單位以上을 履修한 教員司書

(2) 教師 20名以上의 學校——圖書館學 12單位以上을 履修한 教員司書

* 美國의 國民學校 學級當 學生數는 25~30名임

高等學校

(1) 在籍學生 200~250名——圖書館學을 履修한 教師 1名이 1日 2時間을 圖書館勤務로 한다

(2) 在籍學生 251~350名——圖書館學 12單位以上을 履修한 教師 1名이 半日 을 圖書館에 勤務해야 한다.

(3) 在籍學生 350名以上——圖書館學 18單位以上을 履修한 專任教師 1名을 두어야 하고 30單位以上을 履修한 者는 더욱 좋다. 教師 25名以上의 學校는 專門教育을 받은 職員을 別途로 둔다.

다. 美國 南部大學及高等學校協會基準

(1) 學生數 100名 以下

教師의 資格을 가지고 12單位以上의 圖

書館學을 履修한 者로 最少限 授業日의 3分의 1을 圖書館에서 勤務해야 한다.

(2) 學生數 101~300名

教師의 資格을 가지고 12單位以上의 圖書館學을 履修한 者로서 授業日의 半日을 圖書館에서 勤務해야 한다. 特히 學生數 200~300名의 學校에는 別途로 圖書館學을 專攻한 者가 半日以上 圖書館勤務로 하는 것이 더욱 좋다.

(3) 學生數 301~600名

上記한 基準의 資格을 가지고 別途公認 圖書館員 養成機關에서 履修한 科目과 重複되지 않는 科目的 圖書館學 6單位以上 을 履修한者 또는 21單位以上을 가진 司書이어야 하며 1,2年의 授業經驗이 있어야 한다. 特히 兼任의 事務助手를 두는 것이 좋다.

(4) 學生數 501~1000名

(3) 번과 같은 資格과 經驗이 있고 公認 圖書館員 養成機關에서 30單位以上을 履修한者 또는 滿1年 圖書館學을 履修한 專任司書로 해야 한다. 最少限 1名의 事務助手를 두어야 한다.

(5) 學生數 1000~1500名

專任司書 1名과 助手 1名

(6) 學生數 1500~2000名

專任司書 2名과 助手 1名

라. 美國圖書館協會制定 初·中·高等學校圖書館基準

大學에서 圖書館學을 專攻한 專任司書 1人은 學生 500名에게 奉仕한다. 學生 500名을 超過함과 同時에 司書 1人을 增員한다.

司書以外의 事務員은 學生 1000名까지는 1人 1000名을 넘을 때는 1人을 增加한다.

學 校 圖 書 館 設 備 基 準

日本中・高校設備基準(文部省制定)

規格別 規格単位 品 目	1人 ~ 200人	201人 ~ 1000人	1001人 ~ 2000人	2001人 ~ 3000人	3001人 ~ 以上	規 格	單 位
1. 圖 書	1,400冊 (600)	5,400冊 (4,200)	8,400冊 (6,200)	9,400冊 (7,200)	9,400冊 (7,200)		300(圓) (250)
2. 書 架	8 個 (3)	30 個 (20)	47 個 (30)	53 個 (35)	53 個 (35)	個 3尺巾×6段 書 架	(圓) 5,000
3. 閱覽冊床	3 " " (3)	9 " " (9)	19 " " (19)	24 " " (24)	24 " " (24)	3尺×6尺	(圓) 8,500
4. 椅 子	30 " " (18)	54 " " (54)	114 " " (114)	144 " " (144)	144 " " (144)		(圓) 1,200
5. 카一三函	설합수 6 (3)	21 (16)	32 (24)	36 (27)	36 (27)		(圓) 800
6. 受付臺	1 (1)	2 (2)	3 (3)	4 (4)	4 (4)	3尺	(圓) 8,000
7. 受付椅子	1 (1)	2 (2)	3 (3)	4 (4)	4 (4)		(圓) 2,000
8. 製本用具	1 (1)	1 (1)	1 (1)	2 (2)	2 (2)	1組	(圓) 5,000
9. 新聞架	1 (1)	1 (1)	1 (1)	1 (1)	1 (1)	3尺	(圓) 1,500
10. 雜誌架	1 (1)	1 (1)	2 (2)	3 (3)	3 (3)	3尺	(圓) 5,000
11. 베티컬 화일	1 (1)	1 (1)	2 (2)	3 (3)	3 (3)		(圓) 15,000

※ 팔호내는 中學校 基準임.

美國學校圖書館 設備基準

初，中，高校(美國圖書館協會制定)

學校의 크기	圖書館職員		閱覽室			圖書		
	在籍生數	圖書館 學을 專攻한 司書	事務職員	利用者 의面積	最小限의 座席數	閱覽室	種類數	最小限의 冊數
300人	1人	兼職	1人當 25平方 피드	학생 수가 많은 크라 스에 20名 을 加한 좌 석 수	1	1,700	2,000	150弗
500人	1人	1人	〃	75	1	3,500	5,000	〃
1000人	2人	1人	〃	100	2	5,000	7,000	〃
2000人	4人	2人	〃	200	3	6,000	10,000	〃
3000人	6人	3人	〃	300	3	7,000	12,000	〃
5000人	10人	5人	〃	500	5	8,000	15,000	〃

※ 美國에는 각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國家의인 基準은 없다.

2. 學校圖書館의 基本施設

題이다.

學校圖書館施設은 앞으로 制定公布될 圖書館法施行令에서 仔細히 規定되리라 믿기 때문에 여기서는 施設基準에서 規定 할 수 있는 位置와 面積을 檢討하고자 한다.

가. 學校圖書館의 位置

現代學校教育이 要求하는 學校圖書館은 教室의 延長이며 어려운 問題의 解決을 爲한 學習活動의 中心이 되고 學習資料를 提供해 주는 Center가 되므로 學生들이 많이 다니고 드나들기 便利한 場所로서 學校의 가장 中心部에 位置해야 한다.

學校圖書館이 所在하는 位置에 따라 圖書館利用度에 많은 影響을 받기 때문에 位置 選定에 있어서 특히 留意해야 할 問

題이다. 現代의 學校圖書館機能을 認識하지 못하는 學校責任者は 가능한 教室과 떨어지고 한적한 場所를 擇하거나 校舍本館에 設置할 境遇 高層建物인 때는 曼涅層에다 設置하고 있는 影響이 많다. 이것은 放課後 讀書를 願하는 몇몇 學生에게 利用시키는 뜻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세 教育이 要求하는 學校圖書館으로서 教職員 및 學生 全員이 各教科와 連關시켜 資料를 利用케 하려는 意圖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例를 들면 3層建物인 境遇에는 2層에다 圖書館을 設置하는 것이 가장合理的이라고 생각한다.

나. 面積(크기)

學校圖書館의 크기는 奉仕의 對象이 되는 學生數나 奉仕範圍가 校內에 限하는

가 地域社會에도開放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따라 또는 學校의 種類나 規模에 依하여 差異가 있겠지만 大略 在籍生數의 1割을 收容할수 있도록 計劃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制定되는 施行令에도 1人當 0.5坪을 基準으로 하여 在籍學生數의 1割을 收容할 수 있는 넓이의 面積으로 되리라 믿는다.

1) 閱覽室(讀書室)

美國의 閱覽室面積은 初中高校의 區別 없이 學生1人當 0.8坪의 面積으로 在籍生數의 1割을 收容해야 하고 적은 學校는 最低 1學級의 學生을 收容할수 있는 面積이어야 한다. 美國의 圖書館學者 Douglas 나 Willson은 學生1人當 最少 25平方 feed 가 適當하다고 要求한데 對하여 美國圖書館協會에서는 30平方 feed(約1坪)가 最少限 必要하다고 했다.

그리고 1室에 收容하는 人員은 教師 또는 司書教師 및 司書가 讀書나 學習의 指導監督이 될수 있는 限度의 適當한 人員은 100名이고 그 以上인 境遇에는 다른 또 하나의 閱覽室이 必要하다고 했다. 또 收容能力에 있어서 Willson은 在籍生數의 10%~15%가 適當하다는데 對하여 美國圖書館協會에서는 在籍生 500名까지 15%~20%가 되어야 하고 그 以上인 때에는 10%로도 無放하다고 했으며 Douglas는 在籍生 300名以下の 學校에서는 最大學級의 人員數 보다 20名을 더 收容하고 300名以上인 學校는 15%를 收容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했다.

以上 여러 論者들의 意見도 在籍生에 1割~1.5割의 收容을 要求하고 1人當 0.8坪을 基準으로 한 面積이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 基準은 1人當 0.5坪으로 在籍生의 1

割以下를 收容하도록 될 것이니 最低의 面積이라는 認識을 가지고 新設 및 擴充計劃의 設計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必要한 面積으로 參考資料室 新聞雜誌室 整理室(事務室) 職員研究室은 5坪以上 10坪未滿의 施設이 具備되어야 하며 이외에 玄關 休息室 復道 化粧室 및 所持品保管室의 所要面積이 包含되어야 할 것이다.

3. 司書教師資格과 報酬規定에 關한 教育公務員法改定 問題

學校圖書館을 擔當運營한 司書教師問題는 圖書館法第6條 “司書職員의 配置”에

① 學校圖書館에는 閣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圖書館資料 및 運營에 關한 司書教師를 두어야 한다.

② 司書教師의 資格과 養成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閣令으로 定한다라는 條項에 따라 施行令에서 定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司書教師는 그 規模에 따라 配置되는 人員數만이 規定될 것이며 그外는 教育公務員法에 따라야 할 性質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1963年 12月5日字 法律第1463號로 公布된 教育公務員法改定法律을 살펴보면 第3條(教師의 資格) ① “教師는 正教師(1級, 2級) 准教師 教導教師 司書教師 實技教師 養護教師로 나누되 別表一의 資格基準에 該當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文教部長官이 수여하는 資格證을 받은 者라야 한다”로 되어 教導教師와 司書教師의 職名이 드러가게 되었음을 반기운 일이다. 그러나 別表I을 보면 教導教師와 달리 司書教師는 特殊教師로 取扱되어 上位職(校監, 校長)으로 昇

進될 길이 막혀져 있다.

司書教師의 資格基準을 보면

基準1.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圖書館學科를 專攻하고 所定의 教職課程을 履修한者

基準2. 中等學校 準教師以上의 資格證所持者로서 所定의 司書教師養成講習을 받은者로 되어 있고

새教育公務員報酬規程 (1964. 3. 25 大統領令第1763號)에는

가項에 大學教授부터 專任講師까지 規定되고

나項에 高校에서 國民學校까지 校長, 校監, 正教師(1, 2級) 準教師 敎導教師까지 規定되고

다項에 司書教師, 實技教師, 養護教師로
라項에 教育長에서 奬學士, 研究士까지로
區分되어 있다. 나項과 다項의 初任號俸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高等學校인 境遇

- △ 一級正教師 初任俸 11號1級
- △ 二級正教師 " 13號1級
- △ 準教師 " 14號2級
- △ 敎導教師 " 11號1級

다項에는 初·中·高校 區分없이

- △ 司書教師 初任俸 15號1級
- △ 實技教師 " 20號1級
- △ 養護教師 " 20號1級

으로 되어 있다.

教育公務員法資格基準 第1에 規定된 司書教師는 大學에서 4年間 圖書館學을 專攻하고 所定의 教職科目을 履修한 사람이 一般大學을 나오고 準教師가 된 사람보다 格이 낮은 特殊教師로 取扱된 結果가 되어 앞으로 學校圖書館界로 進出할 圖書館學科卒業者들에게 士氣를 低下시켜 學

校圖書館을 하고자 하는 意慾을 法이 생김으로 장려하지 못하고 막는 結果가 되었고 基準 第2에 該當되는 것을 보면

1957年 피바니教育使節團支援下의 延世大學校에 韓國圖書館學堂과 文科大學에 4年制圖書館學科를 新設하면서부터 未備한이나라 圖書館發展에 씨를 뿌리기始作했다. 文教部는 1958年부터 1963年까지 8回에 걸쳐 153名의 司書教師課程(圖書館學300時間)講習을 많은 經費를 드려 延世大學校에 委嘱履修시킨 바 있고 1960年 梨花女大에서 22名을 講習하여 合計 175名이 圖書館學教育을 받고 現在 一線에서 學校圖書館育成과 發展에 中樞的役割을 하고 있다. 그들은 小數의 先覺의인 學校長들과 같이 힘을 합하여 行政的으로나 財政의으로 跃進침이 적은 現實속에서 여러가지 困難을 遭受하여 오죽使命感과 責任感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當局으로 하여금 學校圖書館이 學習活動에 도움이 되고 教育發展에 이바지 할수 있는 機會가 마련되도록 指導監督을 為한 奬學體系가 確立되기를 要求하고 財政의 支援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全然無視되며 버려져 있던 司書職이 圖書館法公布로 겨우 헛빛을 보려는 이때 當然히 教育公務員法改定에는 그들의 資格을 認定하는 經過措置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일할수 있는 意慾과 希望을 주고 더욱 發展시키는 데 努力할 수 있도록 保護해 주는 것이 法의 精神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教育公務員法改定中 司書教師에 關한 條文은 그 反對의인 것으로 覺得하다.

圖書館法第25條規定에 따라 施行令이 定하는 대로 國民學校以上 教育機關에는義務的으로 學校圖書館이 設置되어야 하

며 이를 擔當運營할 사람이 司書教師인 것이다. 司書教師는 聰고 有能한 사람으로 專門知識이 있어야 하며 教育課程에 助言을 하고 學習活動에 資料를 提供할 能力과 學生들을 指導할 力量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을 教育界로 誘致하여면 다음의 事項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關係當局에 要望하는 바이다.

- △ 教育公務員法을 改定하여 附則에 經過措置로 前記 司書教師講習履修者 175名의 資格을 認定하고
- △ 司書教師도 一般教師와 같이 所定의 講習을 履修하고 上位職으로 昇進할 수 있도록 開放되어야 하며
- △ 報酬規定을 改定하여 準教師 보다 初任號俸이 높아져야 上述한 目的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다.

맺는 말

學校圖書館 基準과 基本施設問題 司書教師資格과 報酬規定에 關한 教育公務員法改定問題 以上 3가지를 들어 살펴 보았다. 이것은 學校圖書館發展에 “key”가 되며 航海의 羅針盤이 되는 問題이다. 때문에 頭書 없이 쓰게 된 動機는 當局에서 制定中인 圖書館法施行令이 教育公務員法과 같이 錯悞가 생기지 않도록 事前에 徹底한 檢討와 研究로 이 令이 公布된後 現在보다 더 잘 자라고 살릴 수 있는 即合理的으로 正常的인 發展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이다. 이로 因하여 施行令制定에 多少 도움이 되고 同職者 여러분에게 參考가 된다면 筆者로서는 多幸으로 生覺한다.

(筆者; 濟物高等學校 司書教師)

配布中！

韓國目錄規則

〈菊版 洋裝 約 130面 1,000部 限定版〉

□ 會員 300원
一般 360원

A.L.A의 目標規則 L.C 및 朴奉石의 東書編目規則과 1961年 國際目錄會議에서 決定된 原則 등을 參考자료로 한 우리나라 初有의 體系化된 目錄規則이다.

現在 配布中이오니 購入을 希望하시는 분은 本協會로 [注文하시오.]